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5. 5.
행정위원회

1. 審 查 經 過.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4월 25일 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5년 5월 4일 회부

다. 상정일자 : 2005년 5월 6일

제11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가. 제안이유

2005년 지방세법의 개정(종합토지세 세목폐지 및 재산세로의 통합 과세)과 관련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 표준(안)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첩·시달되었기 새로이 개정된 재산세 규정에 부합되는 과세표준,세율 등의 조문을 정비·보완하는데 있음.

나.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인 지방세법령이 대폭 개정되어 조례조문 상 근거조항을 정비함
(안 제17조, 안 제18조, 안 제22조)

나.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주택분재산세, 건물분재산세, 토지분재산세로 통합되어 종합토지세 부분을 삭제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의 적용기준을 보완함
(안 제3조, 안 제19조, 안 제21조, 안 제23조, 안 제28~29조 <삭제>)

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세율단계의 변경에 따른 표준세율을 정비함
(안 제21조의2)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 9조

○ 서울특별시 세제과 - 784 (2005. 1. 20) 구세조례개정표준안 공문

나.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專 門 委 員 의 檢 討 報 告 要 旨 (專門委員 김찬재)

○ 개정안 제3조 및 제3절 종합토지세편 제28조, 제29조 삭제안은 지방세법 제5조 제2항 지방세의 세목에서 종합토지세가 삭제되었으므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되며,

- 개정안 제17조, 제19조, 제23조는 지방세법 제181조, 제182조의 개정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토지가 포함되어 조문상에 “토지”를 삽입한 것이며,
- 개정안 제18조, 제22조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조문상 근거 조항을 “법 제184조”에서 “법 제186조”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 개정안 제21조(과세표준), 제21조의 2(세율)는 지방세법 제111조, 동법 제187조, 동법 제188조, 동법 제189조, 동법시행령 제138조, 동법시행령 제139조 등의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과세표준 및 세율을 규정하였다고 판단되며,
- 다만 개정안 제21조의 2 제1호 다목의 (3)에서 “제1호 및 제2호외의 토지”는 입법형식상 “제(1) 및 제(2)외의 토지”로 자구정정을 하여야 마땅하다고 사료됨.

4. 審査結果 : 原案可決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7
----------	-----

제출연월일 : 2005. 4.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2005년 지방세법의 개정(종합토지세 세목폐지 및 재산세로의 통합 과세)과 관련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 표준(안)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첩·시달되었기 새로이 개정된 재산세 규정에 부합되는 과세표준,세율 등의 조문을 정비·보완하는데 있음.

2. 주요내용

- 가. 근거법령인 지방세법령이 대폭 개정되어 조례조문 상 근거조항을 정비함
(안 제17조, 안 제18조, 안 제22조)
- 나.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주택분재산세, 건물분재산세, 토지분재산세로 통합되어 종합토지세 부분을 삭제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의 적용기준을 보완함
(안 제3조,안 제19조, 안 제21조, 안 제23조, 안 제28~29조 <삭제>)
- 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세율단계의 변경에 따른 표준세율을 정비함
(안 제21조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 9조
○ 서울특별시 세제과 - 784 (2005. 1. 20) 구세조례개정표준안 공문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입법예고 (2005.2.15 ~ 2005.3.2) : 의견없음
-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7조 본문 중 “법 제184조”를 “법 제186조”로 하며, 제3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8호로 하며, 동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지번,종류,구조,면적 및 용도.

제18조 제1항 중 “법 제184조”를 “법 제186조”로 한다

제19조 제목 중 “건축물”을 “부동산”으로 하고

제1항 중 “사업용 건축물을 말한다.”를 “부동산을 말한다.”로 하며 제1호내지 제4호 각호 중 “건축물”을 “부동산”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과세표준)①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영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법 제1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영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의2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 내지 제5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십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 (1) 전·담·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제22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 녹지지역 및 주거지역내에 소재하는 영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 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만원 + 4,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

4. 선박

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22조 중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을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한다.

제23조 제목 및 제1항 제6호 중 “건축물”을 각각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및 제5호 중 “건축물”을 각각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고,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비과세 토지·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 토지·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 토지·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 토지·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절을 삭제한다.

제28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을 삭제한다.

제29조(토지에 대한 신고의무)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세목) ①구서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1. 면허세 2. 재산세 3. 종합토지세 ③목적세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소세</p> <p>제17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u>법 제184조</u>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기재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 6.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 <신설></p>	<p>제3조(세목) ① _____ ② _____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삭제> ③ _____ 1. (현행과 같음)</p> <p>제17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u>법 제186조</u> _____ _____ _____ _____</p> <p>1. (현행과 같음)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현행2호와 같음)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현행3호와 같음) 6. (현행4호와 같음) 7. (현행5호와 같음) 8. (현행6호와 같음)</p>
<p>제18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u>법 제184조</u>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을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8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u>법 제186조</u> _____ _____ _____ _____</p>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9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법 제266조 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건축물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내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2. 보관 기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건축물 <p>② 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로 한다.</p> <p>제21조(과세표준) 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계산가액으로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21조의 2(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1. 건축물</p> <p>가. 주택: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과세표준)</td> <td style="text-align: center;">(세율)</td> </tr> <tr> <td>1,200만원 이하</td> <td>1,000분의 2.5</td> </tr> <tr> <td>1,200만원 이하 1,600만원 초과</td> <td>2천7천원+1,2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75</td> </tr> <tr> <td>1,600만원 이하 2,200만원 초과</td> <td>4천2천원+1,6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7.5</td> </tr> <tr> <td>2,200만원 이하 3,000만원 초과</td> <td>8천7천원+2,2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22.5</td> </tr> <tr> <td>3,000만원 이하 4,000만원 초과</td> <td>26천7천원+3,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7.5</td> </tr> <tr> <td>4,000만원 초과</td> <td>64천2천원+4,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2.5</td> </tr> </table> <p>나. 공장: 공장·공업유향장을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50</p> <p>다. 제22조 및 영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 내에 소재하는 영 제4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공장용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6</p> <p>라. 가물 내지 다음 이외의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3</p>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000분의 2.5	1,200만원 이하 1,600만원 초과	2천7천원+1,2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75	1,600만원 이하 2,200만원 초과	4천2천원+1,6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7.5	2,200만원 이하 3,000만원 초과	8천7천원+2,2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22.5	3,000만원 이하 4,000만원 초과	26천7천원+3,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7.5	4,000만원 초과	64천2천원+4,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2.5	<p>제19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_____</p> <p>_____</p> <p>_____</p> <p>부동산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_____ 부동산 2. _____ 부동산 3. _____ 부동산 4. _____ 부동산 <p>② (현행과 같음)</p> <p>제21조(과세표준)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영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법 제1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한 금액으로 한다.</p> <p>②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영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p> <p>③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21조의 2(세율) _____</p> <p>1. 토지</p> <p>가. 종합합산과세대상</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과세표준)</td> <td style="text-align: center;">(세율)</td> </tr> <tr> <td>5,000만원 이하</td> <td>1,000분의 2</td> </tr> <tr> <td>5,000만원 초과</td> <td>10만원 + 5,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td> </tr> <tr> <td>1억원 이하</td> <td>25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td> </tr> </table> <p>나. 별도합산과세대상</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과세표준)</td> <td style="text-align: center;">(세율)</td> </tr> <tr> <td>2억원 이하</td> <td>1,000분의 2</td> </tr> <tr> <td>2억원 초과</td> <td>40만원 + 2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td> </tr> <tr> <td>10억원 이하</td> <td>2천800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td> </tr> </table> <p>다. 분리과세대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답·과수원·묘장등지 및 양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② 공장 및 공업유향장을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③ 제1호 및 제2호의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0만원 + 5,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이하	25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40만원 + 2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이하	2천800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000분의 2.5																														
1,200만원 이하 1,600만원 초과	2천7천원+1,2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75																														
1,600만원 이하 2,200만원 초과	4천2천원+1,6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7.5																														
2,200만원 이하 3,000만원 초과	8천7천원+2,2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22.5																														
3,000만원 이하 4,000만원 초과	26천7천원+3,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7.5																														
4,000만원 초과	64천2천원+4,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2.5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0만원 + 5,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이하	25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40만원 + 2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이하	2천800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																														

현행	개정안
<p>2. 선박 가. 고급선박: 그 가액의 1,000분의 50 나. 저가품 이외의 선박: 그 가액의 1,000분의 3 3. 항공기: 그 가액의 1,000분의 3</p> <p>제22조 (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p> <p>제23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면,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시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할 때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② (생략)</p>	<p>2. 건축물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종동합 부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택장은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제22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 녹지지역 및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영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옥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옥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6만원 +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 4. 선박 가.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옥 이외의 선박: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p> <p>제 22 (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 나목 _____</p> <p>제23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① _____</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 및 주택 _____ 2. 건축물 및 주택 _____ 3. 비과세토지·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 토지·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토지·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 _____ 6. 토지·건축물 및 주택 _____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제 3 절 종합토지세	<u><삭제></u>
<p>제 28 조 (구관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 ①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구관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용 토지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 <p>②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p>	<u><삭제></u>
<p>제 29 조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및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소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과세토지가 과세토지로 되거나 과세토지가 비과세토지로 된 때 2.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3.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p>②법 제234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대상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p>	<u><삭제></u>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서류의 송달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p>